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2위원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382700 교정시설 단수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들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교도소 오수처리방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피진정인은 2021. 5. 21.부터 오수처리장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5. 30.부터는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도 제한함으로써 진정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기관 내 단수조치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며, 사전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다. 2021. 6. 14. 경북일보에 급수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한 이후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문제가 악화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 사용으로, 단수조치에 더하여 절수기까지 설치해서 물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 나. 피진정인

2021. 5. 기준 피진정기관의 수용자 평균 물 사용량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사용량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능력이 감소하여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기계장치에 부하가 발생하고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2021. 5. 18.부터 부득이 단수를 시행하였다.

피진정기관은 단수로 인해 수용자의 수용 생활에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필터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등 단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정인의 불편함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고, 현재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단수 일정에 따라 물을 절약하도록 지도한 적은 있으나, 샤워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세탁기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 방식은 과거식(교도소 자체 오수처리 시설), 현재식(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오수처리 후 비용납부)이 있으며, 피진정기관의 경우 과거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과거식의 경우 시청에서 관리

하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한 공사 비용 약 150억 가량(추정)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식의 경우 자체 오수처리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피진정기관 직원 및 수용자들의 물 절약을 위해 단수조치가 필수적이다. 여름에 물을 많이 사용할 때에는 1일 7시간 단수한 바 있으나, 2021. 11. 1. 자체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를 시행한 이후로는 단수 시간이 1일 3시간으로, 현재는 1일 1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일명 “만델라규칙”)」 제15조는 위생설비는 모든 수용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을,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은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 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을, 같은 법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결 및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소장은 수용자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설비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오수처리막 공사계획서, 현장조사결과, 법무부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은 자체오수처리방식에 따른 오수처리용량 부족으로 2021. 5.~2021. 10. 1일 7시간 단수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피진정기관 수용자들은 세탁기 사용 대신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하고, 운동 후에만 세면이나 목욕을 할 수 있었으며, 화장실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기관 2021. 11. 1. 자체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시행 이후로는 1일 3시간, 2021. 6. 현재는 1일 1시간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과도한 물 사용 및 잘못된 쓰레기 처리 방식 등의 사유로 자체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초과로 인하여 단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교정시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비록 현재 피진정기관 시설상 한계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경우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단수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기관 역시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오수처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2021. 5.부터 피진정기관에 단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 존중 및 위생 청결 유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들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교도소 오수처리방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15조 위생설비는 모든 수용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7조 수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구역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 ①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